

과업지시서

I. 과업의 개요

1. 목적

관광명소인 강남역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의성과 예술성있는 작품을 설치하여 세련되고 개성있는 강남이미지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함.

2. 개요

가. 과업명 : 강남역 포토존 조형물 제작·설치

나. 과업기간 : 2015. 10. 23(금) ~ 11. 11(수)

다. 설치위치 : 강남역 M-stage(사진 B지역)



라. 과업범위 : 포토존 조형물 디자인·제작·설치, 기존시설물 철거

3. 내 용

가. 포토존 디자인 제작 설치 일체

- 관광객의 시선을 끄는 볼거리로서의 효과, 사진찍고 싶은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
- 유동인구,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설치장소에 부합하도록 제작 및 설치
-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경관조명 설치
- 인파가 많은 곳을 고려하여 안정성을 확보해 설치

나. 기존 말춤스테이지 철거

- 철거 후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마무리

다. 설치 조형물 홍보

-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진찍은 장소로 홍보

4. 기타사항

가.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디자인비용, 제작·설치비용, 말춤스테이지 철거, 부가세 등) 을 포함하여야 함.

나. 설치 전 강남구청 관광진흥과 담당자로부터 조형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다.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수급인은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과 직접 업무협의를 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이사항이나 의문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우리구의 사전 협의(승락)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처리하여 발생한 제품의 하자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마. 검사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설치 기한 내에 설치에 필요한 제반준비사항을 완료하여 해당 조형물을 계약자가 요청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함.

II.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주요내용

- 가. 포토존 조형물 디자인 및 설치
- 나. 기존 말춤스테이지 조형물 철거
- 다. 설치 조형물 홍보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조형물 디자인 및 실시설계

1) 내 용

-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은 순수 창작성
- 소재, 주제 제약없이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
- 조형물 디자인 및 실시 설계서를 일괄 작성하여 **설계도서 제출**

2) 시공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나. 조형물 제작·설치 등

1) 안전성

- 설치장소가 인파가 많은 곳임을 고려해 구조물의 안전성에 유의해야 함.
- 구조물이 제반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함.

2) 바탕 재질 및 마감재 등

- 조형물의 주재료는 주변의 도시환경과 이질감이 생기지 않고 상호 보완, 조화될수 있으며, 옥외 환경 조건에서 충분히 견딜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함.
- 하절기 또는 동절기의 온도와 강수, 강설 등의 요인에 의해 형태나 색채가 변화되지 않도록 해야 함.

3) 디자인

- 주변여건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로 재질별 단가, 내구성 및 디자인 등을 비교 분석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색채와 소재, 형태적 독창성 및 상징성 등 반영하며 주변과 조화로운 디자인
- 조형물이 전·후, 좌·우 어디에서 바라보든 도시미관을 돋보이게 해야함.

4) 유지관리 측면

- 견고한 재질로서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이 용이한 구조와 형태를 고려 해야 함.
- 내용변경, 교체 및 제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다. 말춤스태이지 철거

- 철거 후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마무리 해야 함.

라. 하자 보수 관련

- 시공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함.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각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하자보증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하자보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

III.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의 의무

- 1)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 2) 사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 3) 사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4) 사업수행자는 수행 중인 용역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청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의 책임

- 1) 사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수행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2)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특허권의 사용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보안사항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유출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 민원 발생시 용역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 1)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2) 본 과업으로 사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하에 피해 당사자와 협의 보상하여야 한다.
- 3)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4) 전기를 이용한 조명을 계획 할 경우에는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5) 사업 수행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2. 실시설계 안내사항

사업예산이 한정된 재원이므로 설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 가. 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도면에 의거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제작 및 설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나. 공사 시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하여야 한다.
- 다. 조형물 설치의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을 촬영하고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완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제작설치목적물을 시행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과업수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수립

가. 안전관리

- 1) 보행자로 하여금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안전조치 완료 후 작업을 시행하고, 이행 도중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을 강구해야 하며,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에게 모든 책임이 귀착되며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습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3) 도급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유념하고 작업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행정사항 및 기타

“발주청”은 용역기간 중 추진실적,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와 필요시 책임자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6. 성과품 제출 목록

준공에 필요한 전·중·후 사진을 각 2부씩 제출한다.